계 약 서

㈜ 아 토 (이하 "갑" 이라 칭함)와 코닉시스템㈜ (이하 "을" 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300mm PECVD System 의 Control S/W(EasyCluster™)에 대한 개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내용)

- 가. 계약 목적물 : 300mm PECVD 용 EasyCluster™ CTC/TMC/PMC/GEM S/W 개발
 - 단, 세부 사양은 별도 사양서에 따른다.
- 나. 총계약 금액 : 일금 <u>구천오백만</u> 원정 (₩ 95,000,000.-)
- 다. 계약 물품 인도일 : 계약후 14주 단, PMC Manual Contro S/W 는 5월말까지 납품하며 GEM 은 Sign-Off후 에도 지원함
- 라. 납품 장소 : 갑의 지정장소
- 마. 하자보증기간 : Sign-Off 완료일로부터 18 개월

제 2 조 (대금 지불)

- 가. 계약금: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인 일금 <u>삼천팔백만</u> 원정 (₩38,000,000.-)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 한다. 단, 상기 금액의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나. 잔금 I: "갑"은 계약 목적물의 개발품 납품 완료 후 40%에 해당되는 금액인 일금 <u>삼천팔백만</u> 원정(₩38,000,000.-)을 잔금 I 으로서 "을"에 게 지급한다. 단, 상기 금액의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다. 잔금 II: "갑"은 20%에 해당되는 일금 <u>일천구백만</u> 원정(₩19,000,000. -) 을 "갑"의 신뢰성 검사에 합격한 후 Sign-Off하면서 "을"에게 지급한 다. 단, 상기 금액의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 3 조 (제작 절차)

- 가.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 또는 "을"이 제시하여 "갑"이 승인한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나. "을"은 본 계약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를 요구된 사양에 만족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 보증)

- 가. "을"은 본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 나. "을"은 본 계약 목적물의 Sign-Off 완료후 18 개월간 그 성능을 책임 보증하하며 하자 보증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성능상의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하자보증보험(계약금의 10%)에 가입하고, 보증보험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5 조 (지체 보상금)

가. "을"은 "갑"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납기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1 일당 계약 금액의 1/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보상금으로 "갑"에게 공제 또는 상환한다.

단, 지체 보상금의 총액은 100/1000을 넘을 수 없다.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및 "갑"의 요청에 의한 작업 내용의 변경 시에는 지체 보상금을 면제한다.

제 6 조 (품질 기준 및 검사)

- 가. 품질은 "갑"이 제시한 사용 또는 "을"이 제시하여 "갑"이 승인한 사양 에 따르며 "갑"의 중간 검사와 최종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나. "을"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치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 라.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지정하는 검사인 의 검사를 받아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마. "갑"은 "을"의 납품이후 Sign-Off 하기 까지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업무 진행한다.

제 7 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가. "을"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채무인에게 채권양도, 입찰,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 권리나 의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품에 대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은 제 3 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 8 조 (안전관리)

- 가. "을"은 "갑"이 요청한 작업장 내에서 작업기간 중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고 "을"의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나. "을"이 작업 중 "갑" 및 "갑"의 종업원 또는 제 3 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 또는 재해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도 전항에 따라 "을" 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을"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객관적으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 나.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의 신청을 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 10 조 (보안유지)

- 가. "을"은 "갑"으로부터 입수한 기술 정보 및 자료를 본 계약서의 목적 외에 타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한다.
- 나. "을"은 "갑"에게 보완유지 각서를 제출한다.

제 11 조 (지적 소유권)

본 계약으로 발생한 지적소유권 및 제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단, 양산 시 "갑"과 "을"이 상호협의한 License Fee 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 (기타)

-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해결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나.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관할 지역 민 사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다. 사후 관리를 위해 "을"은 "갑"이 요청하는 수행 할 수 있도록 Document 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을 교육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01 년 4월 / 일

갑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2다 302호

㈜ 아 토

대표이사 : 문 상 영제

을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작북리 128-2

코닉시스템 ㈜

대표이사 : 정 기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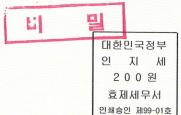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312-026-200100000760 호

보 험 계약자	301-81-27051 코닉시스템(주) 정기로	피 보 혐 자	133-81-27 (주)아토	249
보험가입금액	金 参阡八百萬 원整 ₩38,000,000-		대 보	₩122,690-
보험 기간	2001년 05월 23일부터 2001년 07월 11일 까지 (50일간)			
보증 내용	선금급 지급보충			
특 별 약 관	생략			
특 기 사 항 2001.5.23.에 지급예정인 선금급만 담보함				
주계약내용 계약명 300MM PECVD SYSTEM 의 CONTROL S/W 개발 계약금액 ₩95,000,000- 선금(전도자재)액 ₩38,000,000-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2001년04월10일부터 2001년07월11일까지 선금(전도자재)지급(예정)일 2001년05월23일				

우리 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증권발급부서: 312 안양지점

부 서 장: 김기주 담 당 자: 안용배

전 화 번 호: 0343-447-0021 주 소: 아양 아양5도

소: 안양 안양5동 627-1 (안양타워빌딩2층)

취급 대리점: AQ4 대한

대표이사 사 장 183 34

23 일



※증권발급 사실확인은 www.sgic.co.kr 사이버지점에서 "보증서 건별 조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사장의 서명이 인쇄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이외의 기재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

Ⅰ. 피보험자 관련사항

-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으로써 생긴 손해

②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③4의 ② 또는 10의 ② 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피보험자가 위 [1]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보험금 청구문서

②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1**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5. (보험금 지급액) [1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 (전도금) 또는 전도 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중 미정산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서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 재대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2위 1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 (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Ⅱ.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 7.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 8. (보험료의 환급) ①회사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②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으므로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③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 가를 받지 아니한 때

②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하 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 부터 보험증권이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관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최저보험료가 경과기관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은 때에 는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위 ①의 ③의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Ⅱ. 공통사항

9.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②계약자, 계약금액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10. (손해의 조사) ①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①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1. (구상 및 대위) ①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피보험자는 위 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회사가 위 ①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2.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 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사의 관할법원에 관 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14.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금지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호의 1을 피보험자로하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합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관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긴접적으로 출연금 ·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을 재정지원하는 기관

⑤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 · 승인 · 관리 · 감독 등을 받는 기관

2. (보험금 지급액) []회사는 피보험자가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보통약관 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위 **1**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하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안에 연간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회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증약관을 따릅니다.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합니다) 이 물건 또는 용역을 주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우리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1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관에 발생시킨 채무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90일이 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이 특약이 첨부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연이어 갱신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여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 약관에 따릅니다.